

『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,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·육성
-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19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「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」 출자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출자개요
 - 대상기관

대상기관명	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
대표이사	김철우
소재지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3, 9층 (역산동, 예동빌딩)

- 출자에정액 : 금900,000천원 (1차년도)
- 출자근거
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
 -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0조

○ 사업개요

- 조 합 명 :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
 - 한국모태펀드 2019년 3차 출자사업(지방기업) 선정('19. 9. 2.)
 - 결성근거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0조

* 한국모태펀드 : '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0% 출자한 정부투자 기관인 한국벤처투자(주)가 운용
(조성규모 3조4천억원)

- 운 용 사 : 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
- 출 자 자
 - 업무집행조합원 : 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
 - 유한책임조합원 : 구미시, 경상북도, 구미전자정보기술원, DGB 금융그룹 및 기타
 - 특 별 조 합 원 : 한국모태펀드
- 조합결성액 : 167억원(DGB금융그룹 출자협의 및 출자자 모집을
통해 조합결성액 200억원으로 증액 검토)
- 연도별투자계획

(단위:억원)

구 분	계	2019년	2020년	2021년
합계	167	52	63	52
국비(한국모태펀드)	87	28	31	28
구 미 시	30	9	12	9
경 상 북 도	20	6	8	6
구미전자정보기술원	10	3	4	3
DGB금융그룹 및 기타	16	5	6	5
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	4	1	2	1

- 존속기간 : 8년(투자4년, 회수4년) *출자금 납부 : 3년
- 투자대상 : 구미·경북권 일자리 창출 가능한 중소·벤처기업 등
- 운영방법 : 투자상담회 개최(연2회) 및 지원협의체 운영(연6회)
- 기대효과
 - 지역경제 환경변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전략사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성화, 일자리창출,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

○ 출자의 필요성

- 구미시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·벤처기업이 많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
- 기계, 자동차, 디스플레이, 모바일 등의 기존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
-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0조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0조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, 「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0조
- 예산조치 : 2019년 정리추경시 예산편성(9억원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케이엔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」 은,

-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,
-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의 사태를 거치며 지역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투자하는 펀드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